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안전경영실 안전관리부

제정 2021. 11. 02. 지침 제349호

개정 2022. 11. 23. 지침 제380호

개정 2023. 12. 18. 지침 제412호

(상임이사·지원·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전관리규정」 제28조의6에 따라 건설공사 추진 시 발주자로서의 책임과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이 발주자로서 수행하는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시공 각 단계별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건설안전 준수 의무)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심사평가원의 전 임직원은 건설사업 전 과정에 있어 협력업체를 포함한 근로자와 건설현장 주변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8.>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3. “건설사업 수행부서”(이하 ‘수행부서’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각 실(단, 센터 및 10개 본부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말하며, “수행부서장”이란 수행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설계자”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건설공사 설계 용역을 수주하여 수행하는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5. “시공자”란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현장에서 공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업체의 사업주를 말한다.
6. “안전관리부서”란 「직제규정」 제12조에 따라 안전 중심 경영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제 2 장 건설공사계획 단계

제5조(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 수립) ①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수행부서장은 공사 기법, 사업 부지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이하 ‘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이라 한다)을 설계발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 안전관리 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특성 및 개요, 추진일정
2. 공사 단계별 안전활동 추진과제
3.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설계자 및 시공자의 위험성 평가 지원·이행점검을 위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방안 수립 시 수행부서장은 안전관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안전 관리에 필요한 보완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적정한 공사기간의 산정)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 작업 일수 뿐만 아니라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및 정리기간 등 공사와 관련한 모든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른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적정 공사기간 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 조달청 적정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등 전문기관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 사업 계획 수립 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관리비 계상)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가의 지정 또는 선임) ① 수행부서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의 확인·관리 등 공사 관리를 위해 수행부서의 직원을 지정하거나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선임 기준 등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수행부서장은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령 및 관련 기준 등에 따른 안전 분야 담당자 외에 추가로 안전 담당자 또는 전문가를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안전보건대장) ① 수행부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점 유해·위험요인 및 그에 대한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작성을 위해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에 대한 설계조건을 설계자 선정 또는 설계의 입찰 시 미리 고지하여야 하며, 선정된 설계자에 대하여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따라 착공 전일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건설사업관리계획의 내용, 수립 기준 등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건설공사 설계 단계

제12조(설계 안전성 검토) ① 수행부서장은 제11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설계 시행단계에서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의 검토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도서의 보완 및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설계 안전성 검토와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설계자의 위험성 평가 지원 등) 수행부서장은 설계자의 위험성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중별 유해·위험요인 및 위험성 감소대책 등이 실시설계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안전보건대장) ① 수행부서장은 설계자로 하여금 제공받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작성본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기본설계 시 설계자의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확인하고, 실시 설계 시 설계조건과 위험성 감소대책 등 구체적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설계안전보건대장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설계조건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설계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에게 설계조건 충분 여부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수행부서장은 제12조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와 설계안전보건대장,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하는 위험요소 및 위험성 저감대책 등 공사현장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선정된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장 건설공사 시공 단계

제 1 절 공사 발주 및 착공 이전 단계 준수 사항

제15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 등)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자에게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게 하여 착공 전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시공자에게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게 하여 착공 전일까지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상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공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건설공사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건설기술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 수행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의2(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수행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지정 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이하 “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 전일까지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공단의 지도기관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 2 절 공사 착공 단계 준수 사항

제16조(시공자의 안전관리조직 검토) 수행부서장은 제15조에 따른 건설공사안전관리 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공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의 각종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시공자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공사안전보건대장) ①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 하여금 제공받은 설계안전 보건대장 등을 충실히 반영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작성본에 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관리 및 점검을 위해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시공자가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 등에 명시된 바를 준수 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는 지 여부를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공사가 종료되기 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공사안전보건대장 상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에 대한 시공자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변경을 승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에게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 실태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절 공사 수행 단계 준수 사항

제19조(시공사 위험성 평가 이행 점검) ①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관련 고시에 따른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 하여야 한다.

② 작업 공정 또는 작업 환경이 변경된 경우,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시공자에게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로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위험성 평가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공자의 위험성 감소 대책에 대한 정기적 이행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수행되고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수행부서장은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활동 내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부서장은 분기1회 이상 이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3.>

③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지정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21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수행부서장 또는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행부서장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수행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시공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시공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23조(설계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 ① 수행부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요청 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안전관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설계변경 요청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을 따른다.

제24조(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제한)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3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공자가 요청하여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가 시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전승인요청서를 제출받아 직전 업무일까지 시공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시공자의 건설공사 시행 후 사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후승인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25조(안전시공보고회) ① 시공자는 안전관리계획서 상의 개별 공종 착수 전, 안전시공보고회를 통해 해당 공종의 위험요인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공보고회와 관련한 세부기준은 수행부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 수행부서의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작업허가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2m 이상의 고소작업
2.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3. 철골 구조물 공사
4. 2m 이상의 외부 도장 공사
5. 승강기 설치 공사

제27조(건설기계 반입허가제) 시공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부서장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기계에 대한 제반 정보를 사전에 보고 받아 안전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2. 향타 및 향발기
3. 천공기

제28조(시공자의 법정 건설안전 점검 여부 확인)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 시공자의 법정 건설

안전점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자의 건설현장 주변 공중 안전 조치 여부) ① 시공자는 건설현장 주변 거주 주민 등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35조에 따른 건설사업 진행 상황 점검 시 시공자의 현장 주변 공중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30조(스마트 안전장비)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 하면서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스마트 안전장비를 공사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스마트 안전장비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31조(위생시설의 설치)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건강을 위한 시공자의 세면·목욕시설 및 휴게시설 등 위생시설(이하 ‘위생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시공자의 위생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설치 장소 제공 등의 지원 조치 및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다.

제 4 절 교육훈련 및 사고조사

제32조(안전교육 이행 점검 등)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5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시공자의 안전교육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장 또는 수행부서장은 작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였을 경우, 건설현장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별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관리자, 외부전문가 및 전문 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긴급상황 대응훈련)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현장 재난 및 사고 등 긴급상황에 대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상황 대응훈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긴급상황 대응훈련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현황
2. 긴급상황 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긴급상황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기타 긴급상황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긴급상황 대응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훈련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건설사고 조사 및 조치) ① 수행부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시공자로부터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조치결과의 주요 내용을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고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절 공사현장 안전활동 평가

제35조(건설안전목표 설정 등) ① 수행부서장은 안전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별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계량화된 건설안전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건설안전목표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달성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세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건설안전목표 설정 및 점검 등을 위해 안전관리자 또는 제9조에 따라 선임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6조(건설현장 점검) ① 수행부서장은 진행 중인 건설사업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건설현장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체크리스트를 안전관리부서장에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 점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행부서와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포함하여 합동 안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수행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 결과의 주요 내용을 건설현장 근로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이행 평가) ① 안전관리부서장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공자의 건설안전 책무 이행 실적을 연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한 경우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공헌도가 높은 시공자의 직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38조(외부 건설안전 전문가 자문) 안전관리부서장 및 수행부서장은 이 지침에 따른 건설사업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을 위해, 사업 과정 전반에 외부 건설안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8조의2(건설사업 발주자 안전보건 역량강화) 안전보건관리부서장은 안전관리부서 및 수행부서 직원의 산재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대내·외 교육·훈련 및 전문자격 취득 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23.]

제39조(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법령 및 이에 따른 세부기준과 우리원 「안전관리규정」 및 안전경영시스템(KOSHA-MS) 매뉴얼·절차서·지침서를 준용한다.

부칙<2021. 11. 2., 지침 제349호>

이 지침은 2021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23., 지침 제380호>

이 지침은 2022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18., 지침 제412호>

(상임이사·지원·지원장 명칭 변경 등에 따른 계약사무처리지침 등 26개 지침의 일부개정에 관한 지침)

이 지침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본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2. 현장 제반 정보

공사규모 (공사종류, 연면적 등)	
위 치 도	
인접 도로 현황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	
인접 건축물 현황	
기타 특이사항	

3. 유해·위험요인과 감소대책을 위한 설계조건

1) 공사금액의 적정성

주요공종 공사금액	적정성 여부

※ 공종은 건축공사, 토목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등으로 기재(이하 같다)

2) 공사기간의 적정성

공종	공사기간	적정성 여부

3) 건설공사 주체별 역할과 책임

주체별	역할과 책임
발주자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4)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계조건

No	유해·위험요인	설계조건

4.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5.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설계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대장 작성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2.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서

1) 공사금액 산출서

2) 공사기간 산출서

3.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1) 위험성 평가 기준(발생 가능성(빈도), 중대성(강도), 허용 위험성 기준)

(1)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기준
(2) 허용 위험성 기준

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No	공종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계획

작성 대상 여부	근거	작성계획

5.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배치 대상 여부	배치 계획

6.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 대상 확인 및 실시계획

대상 여부	근거	실시계획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계획

계상금액	계상 근거

8.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9.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공사안전보건대장

1. 사업개요

공 사 명						
현장 주소						
공사기간						
공사금액						
발주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지정된 담당자	
	주소					
설계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설계안전보건대장 담당자	
	주소					
시공자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담당자(연락처)	
	현장소장					
	주소					
건설사업 관리기술 (감리)	회사명				전화번호	
	대표자				현장 담당자	
	주소					
공사개요	주요 구조물	구조	개소	최대 굴착 깊이(M)	최고높이 (M)	연면적 /길이
특수 구조물 개요						
주요 공법						

2.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NO*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시공사 이행계획

※ 설계안전보건대장 3.2) 유해·위험요인별 감소대책 내용 참조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및 확인결과에 대한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 1) 심사결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 2) 확인결과

No.	점검자	점검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내역

일자	당초 계상금액	변경 계상금액	실행금액	변경사유

5.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지도 계약여부,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해당 시 작성)

- 1) 계약여부 (대상, 비대상)
- 2) 지도결과 및 조치내용

No.	지도자	지도일	지적사항	조치사항
1				
2				
3				

6. 작성(변경) 일자 : 00년 00월 00일

7. 작성 및 확인자

1) 작성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2) 확인자

소속	직위	자격	성명	서명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주) (현장대리인: ○○○ (서명),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서명), ☆☆☆-☆☆☆☆-☆☆☆☆)	
일요일 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안전 조치 계획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서명), ☆☆☆-☆☆☆☆-☆☆☆☆ 감리 : ○○○ (서명), ☆☆☆-☆☆☆☆-☆☆☆☆

일요일 공사 승인 요청서(사후)

공 사 명		
공사요청일	0000. 00. 00(일) 00:00~00:00	
위 치		
시 공 사	○○○ (주) (현장대리인: ○○○ (서명), ☆☆☆-☆☆☆☆-☆☆☆☆)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 (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서명), ☆☆☆-☆☆☆☆-☆☆☆☆)	
일요일 긴급공사 시행 사유		
현장 안전관리	주요작업 내용	
	주요 안전 조치	
	작업 근로자수 (공종별)	
	일요일 공사 책임자	현장 : ○○○ (서명), ☆☆☆-☆☆☆☆-☆☆☆☆ 감리 : ○○○ (서명), ☆☆☆-☆☆☆☆-☆☆☆☆

위험공종 작업허가 요청서		결재	작성자	확인자
1. 작업허가 신청		작성일자		
현장명		업체명	작성자	
2. 작업계획				
허가대상 공정	<input type="checkbox"/> 기초파일 작업 <input type="checkbox"/> 흙막이 가시설 작업 <input type="checkbox"/> 거푸집동바리작업			
	<input type="checkbox"/> 높이2m이상 고소작업 <input type="checkbox"/> 2m이상 외부 도장공사			
	<input type="checkbox"/> 기중기를 이용한 중량물 취급 <input type="checkbox"/> 볼트를 비산하는 화기취급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 작업 <input type="checkbox"/> TC설치, 인상, 해체			
	<input type="checkbox"/> 철골구조물 설치 및 해체 <input type="checkbox"/> 승강기 설치공사			
	<input type="checkbox"/> 시스템 동바리 및 비계의 조립 및 해체(H=4.2이상)			
	<input type="checkbox"/> 깊이 1.5이상 안식각 초과하는 굴착작업 <input type="checkbox"/> 사다리 및 2인1조 작업			
작업인원		작업기간		
작업위치				
사용장비				
3. 해당공종 위험성 평가				
공종명		상세위치	작업기간	
위험요인				
관리대책				
4. 작업 개시여부 결정의견				
현장소장 (검토)		결정구분		
건설사업관리단 (승인)		<input type="checkbox"/> 승인 () <input type="checkbox"/> 조건부 승인 () <input type="checkbox"/> 부적합승인 ()		

건설안전목표 점검표

(20 년 상반기/하반기)

담당	팀장	부장	실장

항 목	목 표	달성도
1.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사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0건	
2. 건설현장 발주자 안전보건 교육 이행 실적	반기 1회 이상	
3. 건설현장 자체 안전점검 이행 실적	반기 1회 이상	
4. 건설현장 주변 안전조치 관련 민원 이행률	100%	
5. 안전보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한 외부교육 및 세미나 참석 등 이수 결과 건수	5회 이상	
6. 건설현장 안전제도 이행실적 * 일요일 작업허가제, 고위험 작업허가제, 건설기계 반입허가제, 작업중지요청제 등	미이행 0건 * 이행의무가 있는 작업 건수에 한함	
7. 시공사 위험성평가 이행·점검 실적	반기 1회 이상	
8. 발주자 안전보건회의 개최 및 캠페인 이행 실적	분기 1회 이상	

※ 필요 시 항목 및 목표 수준은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추가 / 변경 가능

건설현장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20 년 상반기/하반기)

담당	팀장	부장	실장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현장 안전관리	① 안전관리계획서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수립 및 제출 적정 여부		
	② 계획서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③ 계획서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④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이행 여부		
	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가설구조물 설치공사 반영 여부		
	⑥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기술사 확인 여부		
	⑦ 안전관리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적정 여부		
	⑧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⑨ 건설현장 주변 안전조치 여부(민원, 출입통제, 통행 장애물 등)		
	⑩ 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이행 여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① 법정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여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② 업무 수행 적정성 여부		
안전보건교육	① 법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일지 비치 여부		
	②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여부		
근로자 보호조치	① 개인보호구 착용 및 지급상태		
	②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및 운영·관리 상태		
위험성 평가	①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② 위험성평가 위해요인별 감소대책 현장 실행 여부		
재해예방 기술지도	① 재해예방 기술지도 적정 실시 여부(월 2회 실시)		
	② 재해예방 기술지도 개선대책 현장 실행 여부		
건설장비	① 건설기계 반입허가제 및 안전성 검토 여부 (타워크레인, 항타 및 항발기, 천공기)		
	② 차량계건설기계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기타 의견			

※ 필요 시 점검항목 등의 내용은 건설현장 특성에 따라 추가 / 변경 가능

시공사 건설안전책무이행평가표

담당	팀장	부장	실장

업체명:

평가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배점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심사평가원(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10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건축·전기·기계·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5
안전관리의 적정성	시공사 안전관리 이행여부와 관련하여, 발주자와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건수 -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88조(벌칙) 제7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제36조(건설현장 안전점검):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건		15
당해 현장의 재해율(%)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 셋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 기준 준용 -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40
계		100	